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산 업 융 합 촉 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민간 접수기구를 신설하여 신청기업의 편의성 제고 필요가 있음.

또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자가 사업 시행 전까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관련 미비사항 사항을 보완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마련하고자 동 시행령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 운영 근거조항 마련(안 제11조의7제1항 및 제38조제5항)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23,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위탁 및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민간 접수기구를 신설하여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함.

나. 책임보험 미비사항 보완(안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 대인피해 및 재산피해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을 명확화하고 책

임보험 관련 조항을 차용한 화재보험법령 등에 부합하게 조문을 명확하게 하도록 함.

다. 자료 보완 및 반려규정 명시(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11조의5 제3항 및 제4항)

-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 자료 보완 요청과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논쟁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국무조정실 사전규제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 없음”을 확임함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제5항제2호”를 “제7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제5항제2호”를 “제7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종전의 제17항) 중 “제16항제1호”를 “제18항제1호”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

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1조의5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1조의3제3항”을 “제11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1조의3제5항부터 제11항”을 “제11조의3제7항부터 제13항”으로 한다.

③ 임시허가 신청의 보완에 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법 제10조의5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단체”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금액 (이하 “보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 1명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4. 재산 피해의 경우: 1사고당 10억원

③ 하나의 사건으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

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2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1조의3제3항(제11조의5제3항)”을 “제11조의3제5항(제11조의5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11조의3제5항(제11조의5제5항)”을 “제11조의3제7항(제11조의5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u> ④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u> 1. <u>신청내용이 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u> 2. <u>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u> 3.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u>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 ----- -----
<u><신설></u>	
③ (생략)	
④ 신청자가 법 제10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등에 관하여	

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⑦ (생략)

⑧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⑩ 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 제20조제2항 및 제3항-----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제7항-----
----- 제20조제2항 및 제3항-----
-----.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⑩ 제9항-----

----- 제7항제2호-----

-----.

⑪ 제9항-----

----- 제7항제2호-----

-----.

⑫ ----- 제11항-----

-----.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⑪ ~ ⑫ (생략)

⑬ 제16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
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
다.

제11조의5(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② (생략)

<신설>

<신설>

-----.

⑬ ~ ⑮ (현행 제11항부터 제1
6항까지와 같음)

⑯ 제18항제1호-----

--.

제11조의5(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시허가 신청의 보완에 대
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
다.

1. 신청내용이 법 제10조의5제1
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
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신청내용이 작성된 것

③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이하 이 조에
서 “임시허가 신청자”라 한다)
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 증명 및 보험기간에 관하
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④ 임시허가 신청자가 법 제10
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
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1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
우 마련해야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마련 및 손해에 대한
배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
조의3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증
을 위한 규제특례”는 “임시허
가”로 본다.

⑥ ~ ⑪ (생략)

이 명백한 경우

⑤ -----

--- 제11조의3제5항-----
--. -----
-----.

⑥ -----

----- 제20조제2항 및
제3항--.

⑦ -----

----- 제11
조의3제7항부터 제13항-----
-----.

-----.

⑧ ~ ⑬ (현행 제6항부터 제11

제11조의7(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20조(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① (생략)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이하 “보험금액”이라 한다)은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

항까지와 같음)

제11조의7(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단체-----.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이하 “보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에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부상자에게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4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4. 부상을 입은 경우: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금액

5.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된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자에게 치료가 끝난 후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 제2호에 따른 금액

7. 재산 피해의 경우: 10억원

<신 설>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 1명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4. 재산 피해의 경우: 1사고당 10억원

③ 하나의 사건으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	<u>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u> <u>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u> <u>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u> <u>3.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2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u> ④ 제1항 내지 제3항----- ----- ----- -----.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
---	---

탁) ① ~ ④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 12. (생략)

13. 제11조의3제3항(제11조의5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4. 제11조의3제5항(제11조의5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

15. (생략)

⑥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11조의3제5항(제11조의5 제5항)-----

14. 제11조의3제7항(제11조의5 제7항)-----

15. (현행과 같음)

⑥ 제4항 및 제5항-----

한다.

⑦ (생략)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연 락 처	(044) 203 - 4528